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276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2.

발 의 자:김민철・이형석・민형배

이용호 · 김용민 · 이용빈

오영환 · 양기대 · 이원택

신정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함. 이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가 보다 많은 주권자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. 우리나라도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여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해왔음.

현행법은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역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, 이는 피선거권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거나 자신이 속한 정치적 집단 또는 자신의 특수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의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침해하고 있음.

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(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

외) 피선거권을 18~21세로 정하고 있으며, 독일 등 실제 다수의 20대 초반 청년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훌륭하게 정치활동을 다수 이어 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48년도 최초 정한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 며 합리적 이유없이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.

이에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·제3항). 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"25세"를 각각 "선거권이 있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피선거권) ①(생 략)	제16조(피선거권) ①(현행과 같
	음)
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	② 선거권이 있는
의 피선거권이 있다.	
	<u>.</u>
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	3
이상(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	
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	
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	
계속하여 選擧日까지) 해당 지	
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	
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	
<u>25세 이상의</u> 국민은 그 지방의	선거권이 있는
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	
의 피선거권이 있다. 이 경우 6	
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	
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	
는 구역변경(제28조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	
포함한다)에 의하여 중단되지	
아니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